

「2023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」은 상시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아동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하여 양육부담을 줄이고 양육자의 휴식을 지원합니다.

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4조(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지원) 제1항에 근거하여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

1 돌봄서비스

● 지원대상

- 만 18세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(매년 1월,7월 소득재조사)

○ 본인부담금 이용요금 ※ 기준요금 : 시간당 11,850원

구분	시간당 이용요금	
	연 960시간 이내	연 960시간 초과시
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 (본인부담 비율)	무료 (본인부담 없음)	11,850원 (전액 자부담)
기준중위소득 120% 초과 (본인부담 비율)	4,740원 (40%)	

○ 1아동당 연 960시간 범위내 지원(960시간 초과시 전액본인부담으로 이용가능)

○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지급

: 1시간을 기본으로 하며, 1시간 초과 서비스 제공시 30분이상은 1시간으로 산정

● 제외대상

- 다른 법령(또는 국가 예산)에 따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과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(. 장애인활동보조지원서비스 . 아이돌보미 .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)

● 지원내용 (2023년 연960시간, 월 140시간 이내 원칙)

- 양육자의 질병, 사회활동 등 일시적 돌봄서비스 필요시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지원
-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 등에서 돌봄서비스 제공

● 신청방법

- 본인 및 가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.면.동 또는 시.군.구로 연중 신청(수시)
--> 상담 및 조사 --> 대상자 선정 및 통지

2 휴식지원프로그램

- 지원대상
 - 소득기준 상관없이 만 18세미만의 모든 장애아 가족으로 돌봄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정도 참여 가능, 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을 우선 지원
- 지원내용
 - 가족관계 회복 및 돌봄노동 분담을 위해 장애아가족 문화.교육프로그램, 휴식 박람회, 가족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, 돌보미를 통한 장애아가족 상담서비스, 생활지도 등 제공 및 자조모임 결성지원 등을 통해 양육의 어려움 경감, 정보 공유 등

3 장애아돌보미 모집 (수시)

1. 모집분야 : 장애아돌보미 (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양육지원)
2. 지원가능연령 : 만 20세 이상 70세 이하의 신체 건강하시고 장애아동 돌봄에 뜻이 있으신 분. (남,녀 가능)
3. 접수일 : **연중 수시 (6차 - 7/7까지)**
4. 제출서류 : 지원서(사진)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개인정보동의서, **결격사유조회동의서 (면접 합격 후 , 건강진단서 등 추가서류 제출)**
5. 지원서 제출법 : 직접방문, 우편접수, 팩스, 이메일 (팩스발송 후에는 반드시 확인전화)
6. 면접일 : **2023년 7월 중순 예정, 서류접수자 개별통보**

7. 양성교육 일정 : 면접합격자 개별공지

8. 돌보미 모집절차 : 지원서 등 서류제출 →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 시행 →면접 통과자에 한해 양성교육 참가가능→ 양성교육 수료(이론30시간, 실습10시간) -> 활동실무 오리엔테이션(2시간) -> 돌보미 활동

* 돌보미 양성교육 우대안내

- | |
|--|
| <p>- 교육 경감(총 20시간 이수) : 특수교사, 사회복지사, 보육교사, 요양보호사
재활관련·장애인복지 관련 전공자
아이돌보미 경력자(최근1년 경력이 360시간 이상인 자)
장애인활동지원사 경력자(최근1년 경력이 180시간이상, 360시간미만인 자)</p> <p>- 교육 면제 : 장애인활동지원사 경력자(최근 1년간 경력이 360시간 이상인 자)</p> <p>=> 관련 서류(경력증명서) 제출시 인정</p> |
|--|

9. 기 타 : 문의사항은 **041-338-1762**로 연락바랍니다.